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5. 9. 13.

교육 사회 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5년 9월 4일
- 회부일자 : 1995년 9월 4일

3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증 개정법률(법률 제4,795호, 1994.12.22)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증 개정령(대통령령 제14,646호, 1995.5.16)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(이하 "관리 계획"이라 한다)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 요 골 자
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함.
-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함.

-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던 것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함.

5. 검토보고

(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,

본 조례안은

-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이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던 것을 "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"로 개정되고
- 지방재정법 2,3항이
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2항으로 개정되는 등
-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: 별첨